

원산지관리, 현장의 목소리

단계별 FTA 활용 전략 : 새로운 FTA에 대비하라

김세희 | 이정 관세법인 관세사

단계별 FTA 활용 전략 : 새로운 FTA에 대비하라



김세희

이정 관세법인 관세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데믹(pandemic) 수준의 세계적 재난으로 인해 사람의 이동 제한뿐 아니라 물품의 수출입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가와 기업이 필사적으로 수출 지원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서 특히 기존의 문제점을 치료하는 FTA 활용 전략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미 우리는 FTA라는 거대 수출 플랫폼을 갖춘 상태다. 어느덧 우리나라와 FTA를 맺은 협정상대

국은 55개국(2020.1월, 발효기준)에 이르며, 협정 수는 16건으로 늘어났다. 그 외 협상 중이거나 발효가 예정된 협정도 줄줄이 대기중이며, 기 발효된 협정도 언제든지 개정협상을 통해 원산지 규정이 복잡해지거나 까다롭게 변경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백신과 같은 새로운 FTA 활용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컨설팅 사례가 참고가 되시길 바란다.



I. 서론

한-인도 CEPA가 적용되는 인도는 오는 4월부터 수입통관 시 원산지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 특혜관세를 배제가능 하도록 관세법을 개정하였다. 이는 결합기준을 규정한 품목이 많은 한-인도 CEPA의 특성상 사후 원산지 검증보다 강화된 조치로, 사전 통관단계부터 원재료 단가 등 민감한 소명 자료가 요구될 수 있다. 이렇듯, 변화하는 FTA에 즉각적인 대응은 지금까지의 특혜관세 적용과 원산지 검증에 따른 대응에 중점을 두었던 FTA 업무에서 나아가 보다 앞선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새로운 FTA 활용 전략으로 사전 조치에 해당하는 계약조건 설정과 사전 원산지 세팅, 그리고 원산지 테더링(Tethering)을 들 수 있고, 이후 조치로는 FTA 사후관리와 원산지 모의 검증을 제시할 수 있다. 그동안의 기고글이 사후관리나 원산지 검증에 대해 다루었던 바, 필자는 언급한 사전 조치에 해당하는 활용 전략에 대해 실무 사례와 함께 상세히 다루고자 한다.

II. 본론

1. 1단계 : 계약조건으로 대비하는 전략

작년 하반기에 FTA 원산지 검증으로 귀책이 없는 사안임에도 관세를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 해당 기업은 해외 수출자가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토대로 특혜관세를 적용하여 수입한 과거 5년간의 실적에 대해 FTA 적용으로 줄였던 관세를 고스란히 반납하는 것에 더하여 가산세와 이자까지 추징당하게 된 것이다.

물론, 수입자에게도 원산지 확인의 의무가 있으나, 이와 관련된 원재료의 단가나 구매처 정보가 노출되는 민감한 정보를 해외 수출자가 공개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수입자가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제한적이다.

다행히 귀책이 없음을 소명해 일부 추징 금액에 대해서는 면제받았고 해외 수출자와 구상권 청구 협상도 원만히 타결되었지만, 여전히 수출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며 보상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올해는 해당 사건에 대해 처분청을 상대로 불복 청구도 진행 중이다. 무엇보다도, 수출기업인 당사자로서는 수입 원재료에 대한 추가적인 관세부담으로 종전의 원가절감 의도가 퇴색되었다.

이와 유사한 FTA 추징 건에서 안타까운 점은 구매팀이나 영업팀에서 계약 체결 시, 관세나 FTA와 관련한 계약조건을 세부적으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필자가 로펌에서 근무할 때도 느꼈지만, 기업이 법무팀이나 로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할 때 대개 세관에 추징당한 전력이 있는 기업에서나 신경을 쓰는 편이다. 거래 상대방에게 협정이나 국내법으로 규정된 의무인 경우에도 구체적인 계약 조항으로 두어야 향후 상대방과 불편해지는 경우를 피할 수 있다. 특히, 수출자가 관세를 부담하는 DDP 조건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해당 추징사례의 경우에는 수출자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 제3자인 관세사에게라도 제공할 의무 조항을 계약에 명시하여 사전 확인단계에서 검토되었더라면, 기업 담당자에게 이렇게 골치 아픈 상황이 닥치진 않았을 것이다. 그 밖의 계약서 작성 시 명확히 하여야 할 내용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계약서 작성 시 고려할 만한 FTA 관련 내용 (예시)】

연번	구분	내용
1	원산지증명 및 확인	수출자의 허락없이 수입자의 원산지증명서 임의발행 금지(적용협정 예: 한미FTA)
2	원산지증명 및 확인	협력사의 원산지확인서 및 원산지판정자료 제공 의무
3	원산지증명 및 확인	수출자의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판정자료 제공 의무
4	원산지증명 및 확인	원산지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대리인에게 원산지판정자료 제공 의무
5	원산지증명 및 확인	기 발급된 원산지증명서 또는 원산지 확인서상의 원산지 변경 시 통지 의무
6	원산지 검증	원산지조사 통지의 고지 의무 및 통지 기한(협정상 기한 및 당사자 국내법상 절차 고려)
7	원산지 검증	관세당국과의 원산지조사 진행상황 및 내용 보고 의무
8	원산지 검증	특혜관세 배제 시 유형별 추정관세 부담 주체
9	구상권	원산지 검증으로 특혜관세 배제 시 구상권 청구 여부
10	구상권	구상금액, 구상금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청구절차

2. 2단계 : 사전 원산지 세팅 전략

기업에서 빈번하게 존재하는 FTA 위험요소는 FTA 전담 부서나 담당자 지정없이 필요에 따라 관련 부서에서 FTA 업무를 일시적으로 수행하거나 원산지 검증으로 입증자료가 요청된 경우에 한해 임시방편으로 대응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기업은 인건비 측면에서 담당자에게 FTA 업무 외에 다른 업무까지 맡기는 경우가 있는 반면, 기업 담당자 사이에서 FTA는 지원 업무이면서 책임이 무겁다는 인식 때문에 전담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FTA 전담부서나 담당자가 없는 기업은 FTA 플랫폼 시대에 매우 뒤떨어진 경영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필자의 고객사 중 세계적 수준의 기업의 경우, 별도의 부서에서 CPTPP나 아직 발효 전인 USMCA 등 타국의 협정까지 염두해 둔 원산지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새로운 FTA의 출현으로 주요 시장에서는 종전과는 완전히 다른 유형의 원산지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원재료 소싱국이 우리나라에서 경쟁국으로 이동하는 무역전환이 될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FTA를 포함한 원산지는 중요한 경영전략 요소로 간주되어야 하며, 사전 조치로써 필히 전담 부서를 통해 원산지 분석 및 원산지 업무가 세팅되어 평시에는 일상불란하게 처리되어야 하는 것이지 그때마다 업무 담당자를 찾아야 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혹여나 전담 인력의 지정이 어렵다면 관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한 관리도 고려해 볼 수 있다.

3. 3단계 : 원산지 테더링(Origin Tethering) 전략

필자는 평시에 이루어지는 FTA 업무에도 제조자, 수출자 및 수입자간 일종의 “원산지 테더링”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가 테더링을 통해 IT 기기를 서로 연결하여 사용하듯, 거래당사자들은 물품의 원산지 정보를 서로 연결¹⁾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원산지 정보의 연결은 비단 FTA뿐 아니라, 비특혜 원산지나 원산지표시 이슈와도 관련된 중요한 문제다.

사실, 원산지 테더링의 문제는 FTA 적용 물품이 원칙적으로 건별 원산지 증명이 되어야 하는 것에서 발생한다. 건별 증명의 문제를 풀고자 함에 있어, 표준 BOM 또는 실적 BOM을 선택 적용하는 것에 실무자마다 이견이 존재하며, 이에 따라 월 마감과 같은 기한별 FTA BOM 관리나 원재료 수불부, 구매원장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FTA 시스템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FTA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담당자가 별도의 엑셀 파일 등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대개 ERP 데이터가 원산지 판정용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ERP와 FTA 시스템 그리고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의 연동되지 않는 경우로,

현재의 FTA 시스템을 개선하거나 신규 시스템 구축으로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하는 방안을 고려하게 된다.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이 요구되는 경우를 예로 들자면, 원산지증명서나 원산지확인서를 포괄발급 하는 경우다. 이런 서류의 발행 시점은 12개월 기간 내의 어느 한 시점에 불과하여, 이후 갑작스럽게 특정 출하 건이 역내산을 미충족할 때 FTA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즉각적인 대처가 어렵다. 원산지 변경 시 FTA관세법에 의거 30일 이내에 거래상대방에게 원산지 증빙서류의 수정을 통보하여야 하지만, 효율성 때문에 포괄발급을 하는 만큼 건별 모니터링할 비합리적인 기업 담당자는 드물다.

또다른 예로는 제조 공정상 여러 협력사와 서로 외주를 주고받는 업체인 경우, 원산지확인서 전달 과정에서 순서가 뒤섞여버리면 기업 담당자가 일부 원재료의 원산지확인서 수취없이 습관적으로 역내산 판정을 하는 오류를 범하기도 한다. 따라서 Optional BOM과 같은 대체 BOM을 도입하거나, BOM 이력관리를 넘어 Routing 관리, 실시간 원산지판정 모니터링 기능 등의 구현이 필요하다.

1) “원산지 테더링”은 필자 자신의 표현이다. 원산지 정보의 연결을 담아 “원산지 테더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물품의 FTA 원산지는 일정 시점의 원산지 증빙(stock 개념)이 아니라 물품의 실제 생산에 투입된 각각의 원재료의 수량, 가격, 원산지 등 유동적인 정보(flow 개념)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월 마감에 의해 단가 설정이나 실적 BOM을 전개를 하는 경우 해당 월에 속하지 만 마감시점 이후나 마감기간 사이에 있는 정보가 고려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간혹, FTA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는 경우에 비용을 절감하려다 주 목적인 커스터마이징(Customizing)을 놓칠 수도 있다. 외부 시스템 업체를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추가적인 인/월(Man Month)이 소요되는 기능에 대해서는 시스템 업체 입장에서 예상치 못한 개발자 투입으로 인해 기존에

구상된 범위를 초과하는 프로젝트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 전에 시스템상으로 구현할 기능을 최대한 구체화하고, FTA 규정과 상충되는 사항 등의 관세 자문을 거쳐서 되도록 기업 특성에 맞게 짜인 FTA 시스템을 도입하시길 권고드린다.



Ⅲ. 결론

설령 FTA가 반복적인 업무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미연에 방어하는 조치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신규 FTA 협정이 발효되거나 기존 협정의 개정은 계속될 것이며, 이와 함께 각국의 관세당국에 의한 원산지 검증도 다양한 기법으로 시도될 수 있다.

FTA 원산지 검증의 핵심도 과거 5년간의 실적에 대해 관세혜택을 받은 물품의 생산에서부터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가 일련의 과정에서 도출되는 원산지 정보를 서로 연결하여, 최종적으로 역내산임을 증명해내는 것인 만큼 언급한 FTA 활용전략 외에도 당사자간의 협조를 통한 새로운 전략으로 빠른 시일내에 수출 활력의 불씨가 되살아나길 기대해 본다. 덧붙여, 바이러스와 싸우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전하고 싶다.